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토론회

‘젠더폭력과 갈등을 넘어’

| 일시 | 2018. 7. 3.(화) 13:30~16:00

| 장소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당

| 주최 | 강원도 ·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 행동하는 강원여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양성평등법센터

| 후원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여성신문 춘천지사  KBS 춘천

 춘천MBC  G1 강원민방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토론회
‘젠더폭력과 갈등을 넘어’

| PROGRAM |

시 간	내 용	
13:00~13:30	등 록	
		사회_ 김경화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사무처장)
13:30~13:50	식전행사	공연 및 동영상 상영
		개회사: 최문순 (강원도지사)
13:50~14:10	개회식	축 사: 한명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축 사: 정진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장)
14:10~14:30	기조강연	우리는 성차별과 불평등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좌장_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은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이소창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유안진 (한림대학교 토론동아리 지양)
14:30~15:40	패널토론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두용 (강원지방경찰청 여성보호담당) 권은진 (강원도 여성복지담당)
15:40~16:00	종합토론 및 폐회	
16:00~16:40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길거리 캠페인	

| CONTENTS |

개 회 식	개회사 ▶ 최문순 (강원도지사) 03
	축 사 ▶ 한명옥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05
	축 사 ▶ 정진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장) 07

기조강연	우리는 성차별과 불평등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09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

패널토론	상담현장에서 보는 젠더폭력 예방과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 37 윤은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젠더 규범과 폭력 43 이소창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20대, 젠더폭력의 경험적 고찰 49 유안진 (한림대학교 토론동아리 지양)
	지역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53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젠더폭력과 입법과제 59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경찰활동 67 백두용 (강원지방경찰청 여성보호담당)
	젠더폭력 해소를 위한 정책 73 권은진 (강원도 여성복지담당)

개회사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양성평등주간 기념토론회, 젠더폭력과 갈등을 넘어서’에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미투운동 확산으로 시작된 젠더폭력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여성에게 안전한 강원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올해 우리는 미투운동을 통해 그동안 숨죽이며 말하지 못했던 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분노하고 또 공감하며 한국사회에 뿌리박힌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
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왔습니다.

저 역시 강원도에서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많은 고심을 거듭
하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경기장 내 성폭력상담
센터를 운영하였고, 세계인의 호평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주간에 열리는 오늘의 토론회는
젠더폭력 없는 성평등한 강원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더 이상 여성들이 젠더폭력의 피해자로 자신의 목소리를 숨죽이지 않도록 강원도가
한국사회의 젠더폭력 근절에 앞장설 수 있도록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이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지혜를 귀담아 듣고, 도정에 실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회는 여타 토론회와 같이 관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 시설협의회, 행동하는 강원여성, 강원대학교 비교법학 연구소 양성평등법센터가 함께하는 민-관-학 젠더 거버넌스 활동의 성과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성평등한 강원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기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와 참석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젠더폭력 없는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3일

강원도지사 **최문순**

축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한명옥입니다.

먼저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행동하는 강원여성연대’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여성혐오범죄와 미투(#Me-TOO) 운동 확산을 계기로 젠더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TV나 신문을 펼쳐 들기가 두렵고 무서워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만큼 여성 대상의 악성 범죄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과 좌절이 상대에 대한 반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 되고 있고 ‘여성혐오’와 같은 성별 갈등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이제 폭력에 대한 문제를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을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들 스스로 조심하라고 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닙니다. 젠더폭력은 가정에서, 회사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지만 여성 개개인이 조심하고 피해 가면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긴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성별 구조 속에 놓인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이 불안하고 행복하지 않은 사회는 누구에게나 다 해롭습니다.

여성인권 관련 법 제도는 세계 선진국에 내 놓을 수 있을 만큼 진화했지만 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폭력과 두려움은 줄어들기는커녕 나날이 커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여성들은 낮도 밤도 안전한 강원도를 원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안전하고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하시어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참석해주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3일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 **한명옥**

축사

최근 언론에서 접한 뉴스들은 우리에게 많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상상하지 못 할 수준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우리를 염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뉴스들이 성범죄에 대한 사회공동의 정의감으로만 연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뉴스들이 젠더 간의 혐오와 갈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젠더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채, 젠더 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추상적인 적을 만들고, 추상적인 적을 가정한 갈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껌질만 벗겨보아도, 여성이라는 추상적인 적은 실상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 나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인 아내,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양육해야 할 나의 공주님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성이라는 추상적인 적 역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동반자이자 보호자인 남편,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양육하는 나의 왕자님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성은 상대로서의 성(性)이 아닌 나를 이루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젠더범죄는 사회를 구성하는 상대방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 나를 이루는 일체에 대한 범죄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공기, 물과 같이 나의 건강, 행복,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 남성을 넘어 '각인의 능력'을 토대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법 전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각인의 기회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젠더를 나누고, 기회를 제한하며, 젠더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원도와 강원도 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행동하는 강원 여성과 함께 우리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가 2018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젠더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공평하고 타당한 기준을 새로운 제도에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젠더는 여성과 함께 남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남성이 소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평하고 타당한 기준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젠더의 또 다른 구성원을 이해시킴으로써 협력을 도모하기를 기대합니다.

2018년 7월 3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장 **정진근**

기조강연

우리는 성차별과 불평등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 미 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토론회 > 2018. 7. 3(화)

우리는 성차별과 불평등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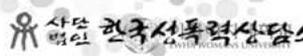
순서

1. 생각 나누기 : 나의 인권감수성 돌아보기, 키우기
2. 피해생존자의 목소리, 여성운동의 흐름
3. 피해생존자 권리 차원에서 본 성폭력 법.정책의 쟁점
4. 젠더에 기반한 폭력에 대한 국제적 기준
5. 맺음말



생각나누기(1) 지금, '혁명'을 하고 있는 우리사회

- 성폭력 피해자가 '말'을 한다.
- 그것도 공개적으로(방송, SNS 등을 통해) 말한다.
- 한 두 명이 아니다... 매일매일 이어진다.
- 사람들이 듣는다. 귀를 열고, 가슴을 열고!
- 정부, 국회가 대책마련으로 분주하다.
- 반격(backlash) 또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다.
- 우리(여성, 시민)들은 변했고, 사회를 변화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의 여성을 위한 전국성폭력상담소

미투(# Me Too), 위드유(# With You)

2018. 1. 29 검찰 내 성폭력사건 말하기 / 2. 14 연극계 성폭력사건 말하기 / 3. 5. 충남 전 지사 성폭력사건 말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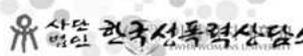
미투(#Me Too) 운동 그 이후, 피해자가 말한다!
[일시] 2018. 3. 5 (월) 11:00 [장소]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



“이윤택 씨의 부인, 출연 왜?”
“보는 관점에 따라서 피고인의 연극에 대한 열정이자 독특한 연기지도 방법의 하나일 뿐”
(5월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변론 중)

<http://view.inh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030> (2018. 5. 9)

- * “... 안 갈 수 없었다. 당시 그는 내가 속한 세상의 왕이었다” - 2018. 2. 14. 김수희 대표 SNS
- * “왜 이제서야 말하냐 묻지 마시고... 이제라도 말해줘서 다행이라고 말해 주세요. 주목 받고 싶었냐고 묻지 마십시오. 이런 일로 주목 받고 싶은 여자는 없습니다.”
- 2018. 3. 5. 기자회견에서 홍선주(연극인)


 대한민국의 여성을 위한 전국성폭력상담소

생각나누기(2) 강남역 10번출구 포스트잇...

- 여성혐오.차별.폭력의 고리를 끊는 연대와 성찰의 계기로!



* 출처 : http://www.womenlink.or.kr/minwoo_actions/18069

한국판 카사노바 박인수 사건(1955) “법은 보호할만한 정조만 보호한다”

- 현역 해군 헌병대위 사칭한 박인수(26세) , 혼인빙자간음죄
- 1954~55년에 여대생을 비롯한 70여명 간음
- 박인수
“결혼을 약속한 적 없고, 여성들이 스스로 몸을 제공”
“70명 중 단지 1명만 처녀”
- 1심 : 서울지방법원 법정(1955. 7. 22) → 무죄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을 보호”
- 2심 : 서울 고등법원 → 징역 1년형
“댄스홀에 다닌다고 해서 모두 내놓은 정조가 아니다”
- 3심 : 대법원 → 상고기각, 유죄 확정



< 법정의 박인수 >

(* 출처 : http://news.chosun.com/svc/content_view/content_view.html?contid=1999062870395)

변00 사건(1988) :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성추행범 혀 절단, 정당방위 인정

- 가정주부 변00씨가 귀가 도중 두명의 청년에게 골목으로 끌려가 추행피해. 강제키스하는 남성의 혀 절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으로 피고소
 검사: 과잉방어로 징역1년 구형 / 1심 : 징역6월 집유 1년 선고
 2심 : 정당방위 인정 무죄 / 3심 : 상고기각, 무죄
 가해자 측 : 피해자의 술, 동서와의 불화 등 거론하며
 부도덕한 여자로 몰아세움
 기소한 검사 : 가해행위 순서 진술이 왜 다르냐고 호통
 피해자: “차라리 그날 죽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것”
- 모순 :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한 것”
 피해자의 변호인단과 여성운동단체의 주장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성폭력상담소

(* 출처 : 한국여성의전화(1999), <한국여성인권운동사>, pp40-42)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1991~3)




김00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1991) 김** 김## 사건공동대책위원회(1992)

한국성폭력상담소

김00사건, 김##김**사건(1991, 1992)

성폭행 범 살해, 정당방위 불인정

- **21년 전 강간한 이웃집 아저씨 살해**(1991)
 - 1심에서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 2심, 3심 기각. 1심 판결내용 확정
 - 정당방위 불인정, 심신상실상태 참작
- **13년간 강간한 의붓아버지를 남친과 살해**(1992)
 - 1심: 남학생 7년형, 여학생 5년형
 - 2심: 남학생 5년형, 여학생 3년형에 집행유예 5년
 - 3심: 상고 기각 2심 판결내용 확정

(* 문민정부 취임시 여학생은 특별사면복권, 남학생은 잔여형의 1/2로 감형)

사람의 권익 한국성폭력상담소

최근 주목할만한 성희롱 관련 판결문

-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의 심리를 할 때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
 - 제자 성희롱 사유로 징계해임된 교수가 낸 교원고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교수의 성희롱 사실을 부정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파기환송한 판결 (대법원, 주심 권순일 대법관, 2018. 4. 12)
- ‘성인지’란 성별에 따른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기본인식

사람의 권익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 판례바꾸기운동



성폭력 수사.재판시민감시단(전성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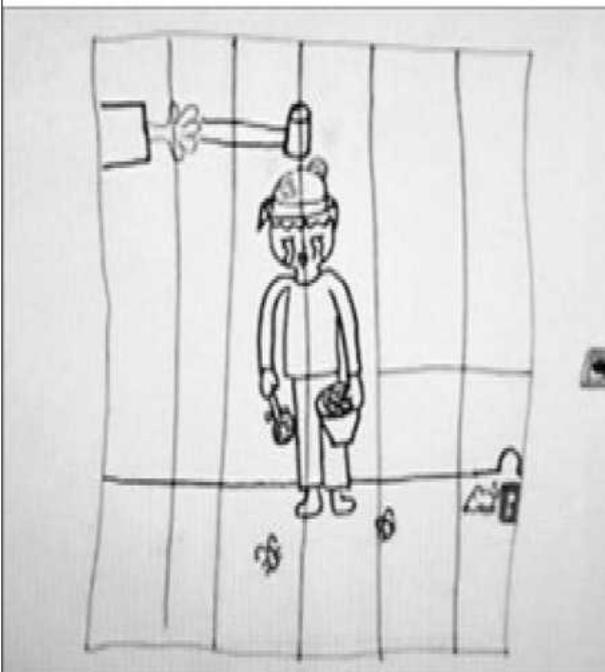
- 형사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근절하고 피해생존자 권리 보장을 위해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에서 발족(2004. 10)
- 고 최진실님의 기부로 초기 활동기금 마련
- 각 상담소에서 사건지원 모니터링 결과 시민감시단에 추천
- 시민감시단에서 심사위원 구성하여 디딤돌, 걸림돌 선정
-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3년 동안 매해 2월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여성인권 디딤돌, 걸림돌> 발표, 192사례

* 자료출처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05~2018년 정기총회 자료집

최초로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한 밀양사건(2004~5)



조두순 사건,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에 국가책임 인정(2008~9)



성폭력피해생존자 말하기 대회(2003~)

* 동영상(speak-out intro)



성폭력 생존자들의 아주 특별한 용기

제1회 생존자 말하기 대회

세상이 들어라!

나는 말한다

참가문의 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
speakout2003@hanmail.net
행사일시 2003. 11. 13(수) 오후 2시~4시 서울대 학생회관 3층
홍보이메일 sisters.or.kr unnet.co.kr/speak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다른몸 되기 프로젝트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1)



밤길 되찾기 달빛시위(2)





일상 속의 성폭력 마주하기

- 길거리 괴롭힘, 공공장소 몰레카메라 -

노상의 진상을 고발하는 일상툰

toon@jinsangroad.org

길거리 괴롭힘을 제보하자! 나누자!

본 사업은 아름다운재단 2015 변화의사나리오 지원으로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진행합니다.

몰카 촬영물을 추적하고자 하는 끈기와 분노,
몰카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분 누구냐!

몰카 모니터링단 몰레를 모집합니다

몰레: 몰카 레지스트링스
몰카 근원을 위해 활동한다고 알려진 비/일/집사

신청: 2015년 9월 1일 ~ 9월 15일
활동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사전인터뷰 뒤에 최종 활동여부를 함께 정하며, 활동내용은 사전인터뷰에서 비밀스럽게 알려드려요.

문의: 02-338-2890
의욕도는 이 순간 저를 비문정출해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년, 달라진 우리는!!!



발언·피켓·행진
18.2.23(금) 19:30
신촌 유플렉스앞 (대신역무대)
주최 한국여성민우회

“강간문화”의 시대는 끝났다.

달라진 우리는
당시의 세계를
부술 것이다

#MeToo



news1

장자연사건 재수사 촉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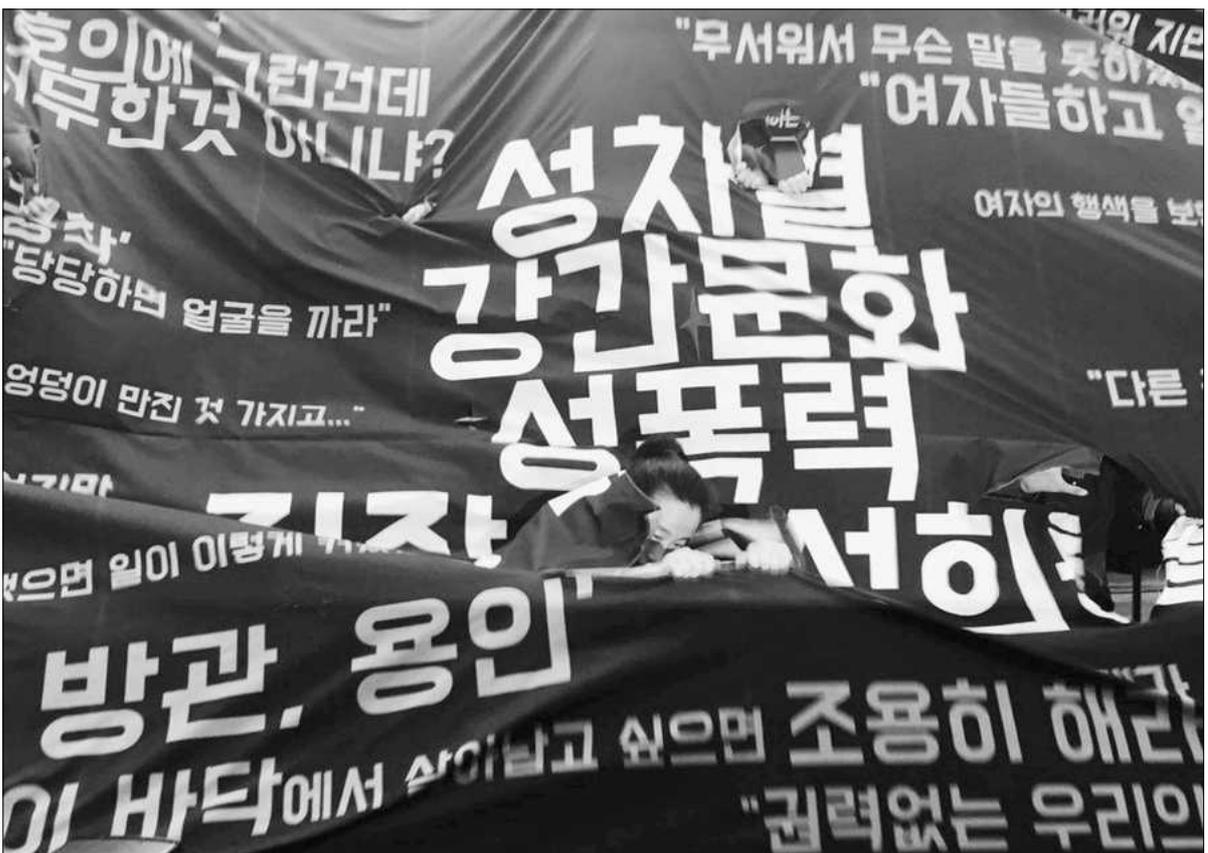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2018. 1. 23)



<故 장자연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를 철저하게 수사하라

시 : 2018년 1월 23일(화) 오후 1시 20분 주최 :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단법인 전국성폭력상담소



2018년, 2018분 동안의 이어말하기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촛불들고 피켓들고
행진하고 공연보며

연대하자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3/27(금) 7시 청계광장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생방송 시청 : 페이스북, 트위터 @metooaction2018



미투가 바꿀 세상을 향해 촛불을 들자!

성차별·성폭력 끝장문화제

3/23(금) 7시 청계광장

#미투 운동과 함께 하는 시민행동

생방송 시청 : 페이스북, 트위터 @metooaction2018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2018. 4/7, 4/21)

"나는 꼭 살아 남아 당신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나젠, 당신들이 두려워할 차례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3월 22-23일 2018분 동안의 이어서말하기 중-

#미투가 바꿀 세상, 우리가 만들자
이번에는 반드시 성차별·성폭력을 끝내자

4/21 전국 동시다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광주 금남로 금남공원 앞 15시
김해 신세계이마트 앞 (해안천 방향) 16시
대구 중앙파출소 앞 광장 18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18시 (부스 17시~)
전주 풍남문광장 15시
포항 북포항 우체국 앞(중앙상가 실개천 거리) 17시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4월7일(토) 오후6시
연남동 경이서순길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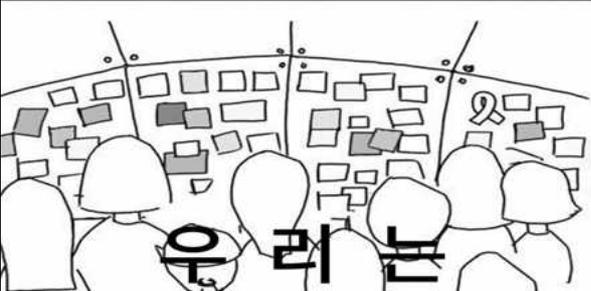
성차별.성폭력 끝장집회 발언문(4/21)

-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

- 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 잘 웃고, 잘 챙겨주고 때론 엉뚱한 행동으로 큰 웃음을 주기도 하던 그런 사람... 우리가 아는 김지은 씨는 여러분 주변에 한 명씩 있을 법한 사람이었습니다.
- 3월 5일, 김지은 씨가 수척해진 얼굴로 뉴스룸에 출연했을 때 저희는 차마 그 영상을 끝까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곁에 있던 평범한 사람 김지은, 그가 자신에게 닥친 시련을 증언하는 것을 보며 함께 숨죽여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 국민들에게 "나를 지켜달라"며 창백한 얼굴로 고개 숙인채 호소하는 김지은 씨의 모습을 보며 그가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꼈는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 뉴스를 출연 후 김지은 씨는 자신의 증언에 옴오와 조적이 있다는 부당한 음해를 받고 있습니다. 김지은 씨가 거짓말을 해서 얻을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피해자로서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과 고통을 알린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김지은 씨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섰습니다.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음해 속에서 여전히 김지은 씨는 자신을 숨긴 채로 힘든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성폭행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안희정의 태도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양복 차림에 고개를 뺏듯이 들고 발언하는 가해자의 모습에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마음이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대선후보인 마냥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 용기를 내어 고백한 피해자는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있고, 가해자는 고개를 뺏듯이 세웁니다.
- 당당한 가해자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해 숨어야만 하는 피해자. 이는 비단 김지은씨만 겪는 상황이 아닐 것입니다. 용기내어 고백한 많은 미투 고발자들이 이렇듯 고통스러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에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점점 막다른 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 "왜 그때 거부하지 못하고 이제와서 시끄럽게 구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해자에게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관계는 결코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 김지은씨뿐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많은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가진 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에게 오히려 잘못을 묻는 시선과 발언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거짓말같다고, 왜 뒤늦게 문제를 일으키냐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가해자의 논리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는 2차가해 아닐까요?
- 2차가해가 피해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고, 아직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한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 용기를 내어 세상에 피해 사실을 알린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연대의 힘입니다. 김지은 씨와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혼자서 아니라라는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함께 응원의 메시지를 쓰며 피해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 이 자리를 빌어 김지은 씨의 말을 한 번 더 전하고 싶습니다.
- "함께, 연대해주세요. 지켜주세요."

함께 한국성폭력상담소

성차별.성폭력 끝장 집회(2018. 5. 17)



우 리 는
멈 추 지
않 는 다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성차별·성폭력 4차 끝장집회

일시 : 5월17일 목요일 PM7:00
장소 : 신논현역 6번 출구 앞
드레스코드 : 검정



‘강남역 여성살해 사건’이 발생한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여성이 안전하고, 성차별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강남역 여성살해사건 추모 #METOO발언
행진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1만인 선언

행진코스



강남역 성폭력상담소
10번출구

우리는 미투(#Me Too) 이전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2018. 5. 17 집회)





무고죄 무죄판결 (2017. 7. 4-5, 서울중앙지법)

-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
- 재판장은 "피고인(성폭력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유명연예인 박00)와 성관계가 성폭행으로 인식될 수 있는 충분한 사정이 존재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고소 취지와 인터뷰 내용은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 항소심, 대법원 최종심에서도 무고죄 무죄 판결



펜스룰(Pence Rule)

- 논란의 '펜스룰' "또 다른 형태의 성차별" vs "가해자 되지 않기 위한 방어" (파이낸셜뉴스 2018. 4. 1) : " #. 2018년 남성이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방법 1. 지하철에 탔을 땀 양손을 어깨 높이 위로 올리십시오. 2. 회사에선 여직원과 눈을 마주치지 말고 대화도 나누지 마십시오. 업무 때문에 불가피할 경우는 메신저를 이용하십시오. 3. 회식과 단합모임에서도 가능하면 여직원은 배제시키고 그게 힘들다면 2의 원칙을 지키십시오."



* 그림출처 (파이낸셜뉴스, 2018. 4. 1)
<http://www.fnnews.com/news/201803311327590470?pg=mnny>



쟁점(1) : 피해자를 보는 관점(1)

-보호에 갇힌 '피해자화'의 문제

• '피해자화'의 정치

- **최협의설의 영향** : 얼마나 극심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고, 여기에 얼마나 저항했는지를 판단기준으로 하는 최협의설의 영향에 의한 피해자상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념** : "평생 고통을 당할", "정신적 살인을 당한 불쌍한 피해자" 등의 시선으로 고착화된 피해자상. 적극적으로 일상을 꾸려가는 피해자는 오히려 의심받는 현실
- **법 명칭, 행정용어 등에서 피해자를 '보호대상자'로 상정**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보호법>,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등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2) : 담당자의 인권감수성, 전문성

- 성폭력 전담제의 허(虛)

- 형사사법절차상, 진료, 보도, 상담과정 등에서 2차 피해
-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
 - 경찰, 검사, 판사, 피고인측 변호인 등 형사사법절차 담당자들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인권감수성 부족으로 인권침해 발생
 - 고소한 피해자 중 25%가 2차 피해 경험(한국성폭력상담소, 2012)
- 허술한 전담제 운영
 - 성폭력사건을 전담하는 경찰, 검찰, 재판부 등 제도 마련되었지만, 대부분 2년 이내에 보직이 바뀜
 - 따라서 성폭력 관련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될 수 없는 구조
 - 실질적인 전담제 운영을 위한 정책적 의지와 지원이 요구됨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3) : 가해자 엄벌주의 - '괴물'과 '나'의 분리

-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일명 '전자발찌')**
 - 대상을 성폭력에서 살인, 강도까지 확대 및 부착기간 강화
 -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범죄자에 대한 선별없이 재범가능성만을 부착 기준으로 하고 있고, 높은 형량을 선고받은 범죄자들 대부분 그 대상이 되고 장기간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으로써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처벌방식으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
- **성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 대상자 동의의 문제 및 실효성, 소요예산 등 논란
- **형량강화, 가중처벌**
 - 형량강화 흐름에서도 집행유예가 초범인지 합의했는지 여부에 따라 좌우되면서 여전히 낱알되고 있어, 단지 입법을 통해 형량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양형기준에서의 피해자 의사 확인이나 가해자의 반성이나 합의에 대한 질적인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게 필요
- **신상정보 등록,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제도**
 - 지역사회 성폭력 대처에 대한 공유나 교육 없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가해자에 대한 일종의 명예형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엄벌주의의 잘못된 얼굴

사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쟁점(4) : 성폭력 예방교육 - 실적위주 교육, 의심되는 실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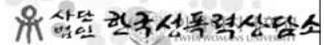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
 - 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음
- **대규모 집체교육의 한계**
- **소규모 토론식 교육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성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을 돕는 교육내용**
- **성폭력 피해 대응 및 지원정보 홍보와 교육 필요 (TV/라디오 통한 공익광고 활성화)**

사람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 판결문에 비친 예방교육과 후원금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수강하고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정기후원금을 납부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므로, 3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6. 18. 선고 2015노95 판결 (재판장 판사최종한, 판사 김정곤, 판사 서삼희)



그것은 '반성'이 아니다.



젠더폭력 근절을 위한 국제적 기준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일반권고 35호,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 여성폭력은 남성에 비해 종속적인 여성의 위치와 그들의 전형적인 역할이 영구화되는 근본적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인 방법 중의 하나로 간주한다.
- 위원회는 여성과 남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성취하고, 여성이 협약에 새겨진 그들의 인권과 본질적 자유를 누리는 데에 그러한 폭력이 심각한 장애물임을 명확히 한다
- 권고(e) : “강간을 포함하여 성폭력을 신변 안전 및 육체적, 성적, 정신적 온전성(integrity)에의 권리에 반하는 범죄로 특정짓고, 부부강간, 지인강간, 데이트 강간을 포함하여, 성범죄의 정의가 자유로운 동의의 부재에 기반을 둔 강압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장하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권고

- 젠더에 기반한 폭력부분, 2018. 3. 12 -

- 형법 297조 개정(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여부로), 부부강간죄 명시
- 가정폭력 상담조건 기소유예 폐지하여 화해와 중재 사용 금지하고 형사처벌 받는 것 보장 등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형사소송 남용(무고, 명예훼손 역고소 등)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 취할 것
- 피해자의 성적 배경을 사법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 금할 것.
- 온라인 플랫폼 및 온라인 배포자에 대한 상당한 재정적 제재 및 예방 조치 강화
- 직장내 성희롱 사례에 대한 예방과 효과적인 관리 및 감독 체제 확립
- 학교, 대학, 군대 포함한 공공기관에서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보장, 보고 및 상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엄격한 비밀보장
- 탈북여성들에게 적절한 상담 등을 위해 탈북여성센타에 적절한 자원 제공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홍콩의 '행동하는 주변인' 캠페인

- 우리 스스로의 일상과 활동을 성찰, 실천, 변화 만들어 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a5EM_1O1nxU



맺음 말

-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권리는 피해자의 용기 있는 말하기에서 출발해 여성인권단체의 지원과 이슈화, 학계의 관심과 연구, 언론보도, 국제사회의 영향, 정부와 국회 등 상호협력관계에 의해 마련
- 이제는 그 동안 마련된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들이 실제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지 구체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연구를 통해 논의되어야
-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야
- 기존의 법.정책이 여성폭력 피해생존자의 보호.지원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피해생존자의 권리보장과 역량강화, 사회문화적 인식 변화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추천하는 책



감사합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사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한걸음 한국성폭력상담소

패널토론

상담현장에서 보는 젠더 폭력의 실태와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

윤은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상담 현장에서 보는 젠더폭력의 실태와 피해자 지원의 문제점

윤은소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장)

1 미투 캠페인의 개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Me Too'라는 해시태그를 달아(#MeToo) 자신이 겪었던 성범죄를 고백함으로써 그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 사건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2017년 10월 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성범죄를 당한 당사자들이 '나도 피해자(Me Too)'라며 글을 쓴다면 주변에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리사 밀라노가 미투 캠페인을 제안한 지 24시간 만에 약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리트윗하며 지지를 표했고, 8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MeToo 해시태그를 달아 자신의 성폭행, 성추행 경험담을 폭로했다.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국장의 성추행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미투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리고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캠페인은 문단계, 연극계 등 문화·예술계, 정치계로까지 번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미투 운동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들을 지지하고 함께한다는 의미로 SNS에 '위드유(#WithYou·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해시태그(#)를 다는 '위드유(With you) 운동'으로도 확산됐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미투 캠페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국내에서의 미투 캠페인과 프로젝트는 발제문에서도 보드시피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진행해온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성폭력피해 생존자 말하기 대회'나 1991년 일본군 강제 위안부 피해생존자 증언 등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다만 그간 무관심과 인식부족으로 대중적인 관심이 부족했는데 최근 언론과 SNS 등에 의해 퍼지면서 전국민적 관심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 미투 피해자나 캠페인을 접하는 대중은 이러한 현상이 왜 확산되며 왜 필요한지를 모르거나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따라서 현장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젠더 폭력 예방 및 방지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다.

2

상담현장에서 보는 도내 젠더폭력의 실태

2017년 한 해 동안 강원도 내 젠더폭력 상담사례는 2개 해바라기센터에서 성폭력(535건), 가정폭력(482건), 성매매(9건), 11개 가정폭력상담소의 가정폭력 상담사례(2,748건), 7개 성폭력상담소 성폭력 상담건수* (2,509건 *여성가족부 보고 서식상 성폭력상담은 사례가 아니고 건수 보고여서 사례 당 여러 건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 사례 수 보다는 많게 집계됨) 그 외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가정폭력·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상담을 집계한다면 훨씬 많은 피해자가 상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러 통계에서 보는 젠더폭력은 여성들에게는 아직도 일상이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를 상담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담 사례 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단 한 건의 피해도 한 개인에게는 심각할 수 있으며, 국가는 단 한명의 국민에 대해서도 그 생명과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고 접근해야하기 때문이다.

3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및 예방을 위한 문제점과 과제

토론자는 지역에서 21년 이상 젠더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고 예방교육,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하게 젠더 폭력 관련 대처 및 예방활동을 해왔다. 그간 성폭력특별법, 가정폭력특별법, 성매매특별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기본법 등 젠더 폭력 관련 다양한 법률이 마련되고 정부 정책도 많이 달라진 것을 현장에서 고스란히 느끼고 있다.

법률이 마련되어 다양하게 피해자 지원이 가능해졌으나 현장에서 늘 아쉬운 점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낸 후 만나는 사람들의 젠더의식이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친지부터 학교나 직장에서의 동료, 이웃, 교사, 사법처리와 재판 과정에서 만나는 경찰관, 검사, 판사, 변호사, 의료지원을 받으며 만나는 의사, 간호사, 행정지원 과정에서의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의 젠더의식 수준은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좋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제도를 어떻게 잘 적용하는가는 관계된 사람들의 몫이다. 사람들의 의식은 제도의 변화만큼 빨리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교육과 홍보가 더욱 절실히 필요하다.

1 | 교육의 내실화 - 공공기관 의무교육의 형식화 탈피

각급 학교 학생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교육한다는 것은 곧 전 국민 대상 교육 및 의식화와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4개 분야 젠더 폭력은 현재

각급 학교 및 공공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은 민간사업장에서 의무교육으로 되어있으나 그 필요성에 비해 형식적이고 수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상 기관과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필요한 내용보다는 ‘짧고 재미있게, 수강생을 잠재적 가해자 취급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게’가 주 요구 사항이다.

의무교육에 대한 점검체계도 허술하여 수강 확인은 수강생의 단순 사인이나 교육현장 사진을 찍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다 보니 정작 강의장에는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은 없거나 교육 시작 초반에 일찍 나가고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고 교육에 많이 노출되어있는 젊거나 하위직급 층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핵심계층에 대해서는 집체교육 외에 토론식 교육을 통해 교육 참가와 교육의 질을 환기시키고 간부를 포함하여 이수확인 시 교육 시작과 끝 시간을 철저히 준수하여 인사에 반영한다. 일반 공공기관에도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예방지 역지원 기관을 통한 교육이 비의무교육대상자에게 촘촘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과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부족한 강사를 발굴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방안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 모 공공기관에서는 고위급 승진 시험에 ‘미투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제출하였다고 한다.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본다. 공공기관, 각급 학교에서 예방교육을 단순 의무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인사 및 인센티브 관련 유·불이익으로 연결시킬 때 형식적, 수동적인 교육은 보다 실질적인 교육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 2 | 피해자 지원의 내실화

미투 관련 성범죄는 권력형 성범죄, 조직의 문화와 관련된 성폭력이 대부분이다. 조직에서 성희롱 등 성범죄가 발생하고 드러나게 되면 조사와 심의, 가해자 징계 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로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이 요구된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꺼리게 되고 이는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피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알게 모르게 조직에 불편을 끼쳤다는 눈초리를 받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 2월부터 이러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문화의 변화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중앙단위에서 수행하여 지역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근로권, 노동권, 학습권을 보장하며 사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미투-위드유 센터를 해바라기센터나 1366센터를 거점으로 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3 | 사법지원인력 확보

피해자가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가해자로부터 잘못했다는 사과를 받고 자신의 피해가 공적으로 인정되어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드러내고 민·형사상 사법처리 과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

다. 정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중소도시 농어촌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며 체감하는 법적 지원 현장은 아직도 어렵기만 하다. 우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 쉽지 않다. 양적인 문제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국선 변호사 수준(*때로 더 낮은 수준)의 지원으로 젠더의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여전히 지역 여건상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중앙이나 지역, 대도시와 농어촌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 예산으로 지원하는 피해자 지원 제도를 지역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도내 오지에서도 언제든지 젠더의식을 갖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제대로 된 피해자 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4 | 피해자 지원기관의 확충 및 인력지원

대부분의 피해자가 최초로 찾아가는 기관은 젠더 폭력 피해자 지원 상담소이다. 따라서 상담소는 가능한 피해자와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여야 한다. 강원도는 타 시·도에 비해 아직도 상담소 수가 미흡한 수준이다. 양양, 고성, 평창, 인제, 양구, 화천 등 상담소가 없는 시·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자 지원과 예방활동을 위한 상담소 및 보호시설, 긴급피난처의 인원 확충도 요구된다. 그리고 타 복지시설과 균형을 맞추는 인건비의 현실화 등은 지역에서 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경력 축적 가능한 인적자원 확보를 위하여 필수이다.

교육을 잘한다는 것은 교사의 질과 비례관계에 있듯이 피해자 지원과 젠더 폭력 예방 활동은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게 되는 상담원의 전문성, 유능함과 무관할 수 없다. 좋은 정책을 직접 수행해야 하는 전문 인력 확보 및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러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과 구성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4

관심 갖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기

우리 사회에서 젠더 폭력이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적은 없었다고 본다. 그러나 그 관심은 아직 피해자 관점보다는 가해자의 생각과 언어로 보는 것이 더 많다. 진정 젠더 폭력을 바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관점에서 젠더 폭력을 더 자세히 보아야 한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더 깊이, 더 온전하게 피해자의 언어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리할 때 피해자는 용기를 내고 말할 수 있다. 우리 모두 이제껏 익숙했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언어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까지로 나아갈 때 우리 사회는 젠더 폭력으로부터 더욱 안전해 질 것이다. 안전한 일상은 특정한 사람의 권리가 아니다.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이것이 바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의 시대적인 요구라고 본다.

패널토론

젠더 규범과 폭력에 대하여

이 소 창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젠더 규범과 폭력에 대하여

이 소 창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1 들어가면서

어렸을 적부터 몸이 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두드러진 남자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는 어렸을 적부터 남자답게 자라라는 강요에 의해 초등학교 축구부에 들어갔으며 축구부 내에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이유로 축구부 선배 집단에게 왕따를 당하고 성기에 대한 직접적인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이 아이는 자라면서 더욱더 많은 남성에 대한 역사적, 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사회적인 압박을 느끼며 자라왔다. 하지만 타고난 천성과 기질은 바꾸기 어려웠으며 그 아이는 스스로를 더욱 남성적인 아이로 통제하며 스스로를 감시했다.

2 젠더 규범에 의한 폭력 경험

위의 사례는 필자의 초등학생 때 겪었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내용이다. 필자는 항상 뼈대 있는 가문의 장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어린시절부터 한국 사회의 남성이라면 해야 할 것들에 대해 교육을 받아왔다. 남자라면 때론 참고, 견디고, 당당하고, 용감하고,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요 받아왔다. 하지만 타고난 체질 때문인지 집안에서 원하는 남성으로 자라기에는 선천적으로 몸이 허약했고, 성격은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다. 어린시절에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 단순히 내가 잘못된 것으로 인식됐다. 내가 잘못할수록 집안의 압박은 더욱더 강해졌고, 때문에 성격은 강해지기보다 더욱 소심해지고 내성적으로 변해갔던 것 같다. 단지 그저 울음이 많고 수줍음이 많았던 아이였을 수도 있던 아이는 남자답지 못한 아이가 되었고, 돌이켜보면 그 시절엔 그저 부모님의 기대에 부흥하고 싶은 아들이 되기 위해 노력했던 기억밖에 남지 않았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나와 맞는 친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새로운 집단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 어쩌면 당연한 감정처럼 보이겠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확실히 남과 달랐던 것 같다. 빈약하고 소심한 남자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먼저 표적이 되었고, 결국 집단 내 왕따를 당했고, 괴롭힘에 반항 또한 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남자답지 못하다는 사소한 이유가 그들이 더 무섭게 느껴졌던 것 같다. 그 이후 2차 성징을 보내고 2학년에 진학하기 전 타고난 성격에 대해서는 바꿀 수 없으니 남자답게 보이기 위해 1학년 때 나를 괴롭혔던 학우들을 모델로 남에게 보이는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며 연습했다. 그 결과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남자답게 보이는 행동에 대해 통제하는 것에 익숙해졌다. 하지만 그에 대해 집요한 강박으로 인해 항상 내 모습을 지켜보는 3자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됐고, 누군가가 나의 대해 평가하는 것에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나의 행동은 젠더 규범에 의한 정신적인 폭력에 의해 구성됐다.

3 젠더 규범에 대하여

한국 사회에는 각각의 젠더에 대한 사회 통념적인 인식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남성인 필자는 “힘”, “권력”, “가장”, “왕” 등등의 이미지를 강요받으며 자라왔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젠더에 대한 담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담론대한 이미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오는 사회구조적인 억압과 제재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남자이지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혹은 왜소한 체격과 병약한 인상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수반하고 있으며 남성 집단 내에 속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하물며 학우들과의 집단에서도 배제되는 양상 또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에 대한 인식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성적인 차별이 존재하며 다양한 형태의 비난과 조롱을 수반한다.

이러한 구조적으로 부여된 사회 규범은 결국 스스로를 남자는 남자답게 혹은 여자는 여자답게 통제하는 근간이 된다. 사회적인 억압과 전반적인 인식은 주권적 개체들을 일련의 틀에 구속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 틀에 속하지 못 한 부류는 차별받는다. 이렇게 형성된 젠더 규범에 대해서 우리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러한 일정한 교육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무언의 기준점을 형성한다. 또한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행동하도록 교육한다. 우리는 생활양식의 무의식적인 행동에서 이미 통제받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

마치면서

나는 어릴 때부터 받아왔던 이 젠더 규범에 대한 구속과 통제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었다. “왜 나는 남자다워야 하지?”라는 질문이 존재했으며 남자다움의 기준이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나 자신을 통제하게 됐다. 사회에서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형성된 규범에 대해서 나는 사회의 압박과 구속에 의한 혹은 제3자를 통한 정신적인 폭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젠더 전체에 관한 포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우리를 구속하는 틀의 존재여부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상과 현실의 경계가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지식인이 올바른 의견 제시가 필요하듯, 지식인의 올바른 지도를 통해 사회적 틀에 대해 대중이 성찰하고 틀에 대해 비판하는 자세가 확립돼야 비로소 사회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원동력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패널토론

20대, 젠더 폭력의 경험적 고찰

유 안 진

한림대학교 토론동아리 지양

20대, 젠더 폭력의 경험적 고찰

유 안 진

(한림대학교 토론동아리 지양)

안녕하세요, 한림대학교 사회학과에 재학 중인 유안진입니다. 저는 오늘 조금 불편하고 지루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타지, 새로운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오는 설렘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구한 자취방은 외지고 어두운 곳에 위치했고 늦은 시간 집에 귀가할 때엔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제 갈 길을 갔을지라도 저는 경계해야 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늦게 귀가한, 옷차림을 단정히 하지 않은, 저의 불찰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층이었던 저희 집엔 종종 술 취한 남자들이 번호키를 누르고 문을 두들겼고 제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그 사람이 지나가길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한번은 집주인 아저씨가 무슨 화장품을 그렇게 많이 사냐며 타박을 주셨습니다. 제가 내놓은 택배 박스를 확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택배는 학교로 시키고 배달음식을 받을 땐 건물 밖에서 받아 제가 몇 호에 사는지 모르게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일상 행동과 동선에서 조심성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것이 되어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20대의 젠더폭력은 성 차별적인 책임감이었습니다. 성범죄가 일어나면 범죄자의 책임을 묻는 대신,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키는 것이 여성의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더 강조하며, 피해자가 행동이나 옷차림 등 조금 더 조심했더라면 추행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긴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성범죄는 가해자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기사에서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대신, 여성들에게 과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강간은 범죄지만 음주는 불법행위도 아닌데도 말이죠.

어떠신가요? 잠재적 범죄자 취급에 기분이 불편하신가요? 늘 느꼈던 불안감에 이제 지루한 이야기인가요? 저는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불편한 이야기도, 늘 듣던 뻘하고 지루한 이야기도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에게 안전을 스스로 지키라는 책임감이 강요될수록, 불안감을 키워갈수록. 남성들은 자연스럽게 잠재적 범죄자가 됩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두려워하며 배척하게 됩니다. 실제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차이와 차별, 역차별과 같은 단어들은 화제

가 되었다 하면 예외 없이 여성과 남성의 대립으로 서로의 탓을 하며 극적인 감정싸움으로 번지곤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점점 젠더가 주제가 될 법한 이야기는 피하게 되고 온라인상에서는 더욱 활발한 젠더싸움, 그리고 젠더 폭력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열린 시각과 해결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방법들 중 한 가지가 오늘 제 이야기와 같은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계점을 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임계점을 넘으면 본능적인 거부감이 장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민감해하는 어린 사람이 윗사람에게 반말하면서 대드는 상황에서 느끼는 본능적인 위화감과 비슷합니다. 이 임계점을 넘으면 더 이상 성 평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적절한 언행을 하면 남녀 불문하고 다 움찔하게 되고 성 고정관념에 대해 불편해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 평등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이해 불가능한 소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기 꺼려하는 이 이야기는 진정한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여성, 남성이 아닌 나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성차별주의를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젠더 폭력은 절대로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남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과 그리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삶의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불편한 문제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패널토론

지역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지역이라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자

정윤경

(춘천여성민우회 상임대표)

지난 3월 8일 춘천의 여성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불을 담긴 중심에는 검찰 내 성폭행 피해자의 용감한 증언과 분노를 폭발시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있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은 거리를 1시간여 행진했고 많은 언론들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명동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어 가진 간담회에서는 지역현안에 대해서 함께 힘을 모으자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칭 '미투 춘천'이라는 밴드도 만들었습니다. 미투운동의 성과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대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것 또한 지역에서 가져가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입니다.

미투 운동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3월부터 도내 여기저기서 사건 등이 터졌습니다. 언론들은 어느 때보다 민감성을 발휘하여 보도를 했습니다. 속초시 산하기관장인 c씨가 한 모임에서 물부족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나누다가 농담한다며 나이든 여성의 몸과 비유하는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며 사퇴를 요구한 사건, 도내 대학가에도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 대학 내 성평등인권센터에 접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우회 사무실에도 미투를 하고 싶다는 문의가 그즈음 많이 들어왔습니다. 검찰내 성추행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는 3월에도 강원도에서는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월에는 춘천지검 원주지청 수사관이 후배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중에도 평창에서 도내 모 국회의원실 비서관이 성추행해 조사 중이라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뉴스는 일회성으로 보도 되고 말 뿐 그 이후에 가해자가 어떻게 처벌을 받았고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폭력사건은 쉽게 잊혀집니다. 작은 지역이라면 보도조차 되지 않을 것입니다. 민우회에 자신이 직장에서 겪은 수십 차례의 성희롱사건을 의뢰한 000씨. 그녀는 자신의 직장이 있는 곳의 00성폭력상담소에 사건접수를 하려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여러 곳을 돌고 돌아 민우회에 전화를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정신적 피해와 금전적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미약하여 그 부분에 있어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피해자인 그녀가 발품을 팔아서 얻은 것들이고 지역

사회의 작은 여성단체가 그녀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렇듯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가 해결되기도 어렵습니다.

1998년 강원대학교수가 여학생을 성희롱한 사건이 있었는데 몇 년여에 걸쳐 학생들이 서명을 받고 대자보, 피켓팅을 하고 시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사례가 있지만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었고 대부분 학내에서 일어나 문제들 또한 드러나지 않고 묻혀버리는 실정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는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미투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액션입니다.

첫째, 성폭력 문제의 A부터 Z를 전담 할 독립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6.1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여성 유권자네트워크가 제안한 것 또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었습니다.

둘째는 교육의 장에서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에 맞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여성폭력 인식개선과 여성폭력 예방문화를 확산하는 것 입니다.

가해자를 변호해 줄 언어와 사례는 많으나 피해자를 위한 공간과 언어가 없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셋째는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연대와 지지에 지역 격차는 없지만, 수도권에 비해 지역사회의 미투가 상대적으로 조용한 건,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지역의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정서적 이해와 친밀감의 시선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린다면 피해자를 두 번 울게 하는 2차 가해는 사라질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미투 운동'과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데만 멈추지 말고 내가 먼저 나서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미 퍼스트 (me first)' 운동에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투, 위드 유를 이야기하는 첫 사람 되기' 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목소리들이 모여 정치적 프레임을 덧씌워 폭로의 의도를 왜곡 시키거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2차 가해에 가담하는 사람에게 강력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TV, 라디오, 신문, 눈, 길거리 전단지, 현수막 등 모든 매체를 동원) 가해자들에게는 경고를, 피해자들에게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들의 언어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더불어 내가 했던 말들 혹은 내가 주변에서 봐왔던 행동들이 혹시 피해자에게 성적 모멸감이나 수치심

을 준 것은 아닌가 라는 자기성찰을 끊임없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넷째, 미투 운동은 여성단체, 여성들만이 해야 하는 운동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입니다. 시민운동,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해나가야 합니다.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지지해주는 'with you(위드유)'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서로의 경험을 집단들이 같이 말해주는 것, 피해자를 지지하는 'with you(위드유)'가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너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집단으로 말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위드유가 안 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뤄져 왔으며 이제는 미투나 위드유를 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공간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결의 선언'을 함께 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선언을 통해 성차별이 있는 불평등한 세상에 조금 더 민감해지고 'with you(위드유)'를 하루 세 번 이를 닦듯이 자연스럽게 나의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성평등한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해 갈 것입니다.

2016년 강원도는 안전지수에서(범죄, 안전사고, 자살 포함)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성도 평등하게 밤거리를 걷고 어디든 언제라도 갈 수 있으며 밤늦게 택시를 타도 불안에 떨지 않을 지역사회를 위해 지자체와 도민이 함께 가해자의 감시자가 되고 피해자에게는 조력자가 되어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패널토론

젠더폭력과 입법과제

이윤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젠더폭력과 입법과제

이 윤 정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들어가며

지난 일 년 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중요한 뉴스가 쏟아지는 통에 새로운 뉴스를 따라 잡는 데만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어느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의 폭로를 계기로 대학가, 문화예술계 등등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은 최근의 많은 이슈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계기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과 사회에서의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권위와 위계에 눌려 제대로 드러내지 못했던 개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고 이에 많은 사람들이 동감하고 권력형 성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인식하면서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동력이 급속히 모아지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용기를 내어 폭로하고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오히려 비난이 가해지고, 무고나 명예훼손혐의가 덧씌워지는 등의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일부에서지만 미투 운동에 대해 대안으로 펜스를 거론하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도 느낍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님께서 이미 기초강연에서 젠더폭력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말 폭넓은 방면에서 잘 말씀해주셔서 제가 더 할 이야기가 있을까 싶었습니다만 그 중 법제도상의 문제점을 추려내어 법률실무가이자 법학자의 입장에서 이 논의를 구체화해 보는 것이 이 토론회에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미투 운동에서도 분명하게 인지된 바 있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입법적 해결의 방향을 정리해보려고 하고, 구체적으로는 기존 법제도의 적용과 운용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과 현행 법제도상으로는 규제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젠더폭력과 이에 대한 입법적 과제의 문제를 나누어 전자의 논의로는 이미경 소장님께서도 기초강연에서 다루고 계신,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에 따른 무고 및 명예훼손죄의 성립의 문제를, 후자의 논의로는 몰래 카메라, 리벤지포르노 등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율책을 오늘 토론의 장으로 던져 보고자 합니다.

미투 운동에서 드러난 미흡한 피해자 보호책과 무고죄 등의 함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려고 자료를 찾아 놀란 점이 미투 운동의 본격화를 전후하여 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이 매우 많이 발의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개정안이 내용이 대체로 중복되고 발의되어 있기는 하지만 개정안 발의 이유에 미투가 거론된 개정안이 무려 100여건 이상 발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의 개정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행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보다 높은 형인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현행 형법상으로는 공연한 자리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밝히면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과 피해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면 비록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는 법논리(형법 제310조)가 보장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형사처벌조항은 성폭력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되고, 실제로 미투 운동이 확산될 때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명 등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언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사실 꼭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지 말자는 논의가 형법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의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지는 형법 개정안(황주홍의원안, 2012254)이나 성폭력 피해 사실의 경우만이라도 한정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을 배제하지는 법안(유승희의원안, 2012368/ 진선미의원안, 2012397)이 발의되어 있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이나 위법성 조각사유를 구체화하여 적용범위를 제한하지는 법안(표창원의원안, 2012510/ 이혜훈의원안, 2012974)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밝힘으로써 본인, 그리고 비슷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왜곡된 구조와 성의식의 개선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의미가 컸던 미투 운동의 본질에 착안해서 보면, 진실의 공개의 필요성과 그 가치는 개인의 명예와 비교하여 결코 가볍지 않고 현행 형법의 해석상 인정되는 위법성 조각의 사유는 그 가치에 비해 너무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명예는 진실 공방의 결과에 수반되어야 하고, 성폭력 사실의 공개를 포함하여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진실을 말한 입에 형사처벌로 재갈을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관심을 받은 범죄가 무고죄일 것입니다. 사실 성폭력사건이 이슈가 될 때마다 가해자의 방어 논리인 '꽃뱀론'의 등장은 이제 정형적인 사건 진행 수순처럼 보입니다. 숨어서 괴

로워하는 등의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태도를 조금이라도 발견하면 마치 피해자가 원하거나 노린 것이 있어 성폭력 피해사실을 조작한 것 인양 몰아잡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검사도 인사상의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비난을 받았고, 사진 출사 피해자의 경우 온건한 태도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만으로 동의하에 촬영을 하여 실제 피해가 없으면서도 허위로 피해사실을 조작하였다는 오해를 받았으며,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미투 고발을 빌미로 금전적 이익을 요구 당했다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 상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가해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고소한 피해자는 반대로 무고죄의 피해자가 됩니다. 형법 제156조에서 규정하는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앞서 본 명예훼손죄 이상으로 무고죄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밝히는데 주저하는 이유가 되고 특히 성폭력 가해자에게는 강력한 방어무기가 됩니다. 최근 미투 운동의 결과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용기 있게 밝힌 후에 가해자들이 무고로 피해자들을 고소하면서 피해자임에도 무고죄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문제로 2차 피해를 당하는 점이 지적되자 최근에 법무부는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 무고죄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된 개정안으로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해 사실 수사에 앞서 가해자가 제기한 무고죄로 피해자가 수사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무고죄의 수사를 미룬다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실제 무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존하는 성폭력 범죄의 특수성과 문답을 통해 수사기관이 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사 기술, 더구나 남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도 만연한 현실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수사 와 무고죄의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피해자가 제대로 소신껏 피해의 진술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자명합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고죄의 수사가 성폭력 범죄의 수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조강연에서도 지적하시고 계시는 것처럼 사회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 오히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다소곳한 태도의 전형적인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경우 보호의 필요성을 거부하는 가해자 중심의 분위기입니다. 이 때문에도 이미 2차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오히려 범죄혐의를 부여하여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는 고통을 겪게 하는 것은 가해자 중심의 법 또는 법의 운용이므로 조속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3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젠더폭력과 이에 대한 입법 대책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주변은 카메라렌즈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카메라가 부착된 휴대폰이나 소형 카메라의 대량공급으로 누구나 언제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어떤 눈에 의해 녹화되고 있을 가능성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과 통신의 발달로 녹화된 영상은 쉽고 빠르고 넓게 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드러내놓고 크게 문제를 삼기를 조심스럽지만 나체사진이나 성관계 영상 등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고통을 겪은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하다 발각된 사건은 공공시설마다 있는가 싶을 정도로 흔한 이야기이고, 개인의 성관계 영상이 회원수가 100만명에 이르는 음란물사이트에 실제 사생활이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가 되고, 심지어 신원까지 밝혀 유포가 되기까지 합니다.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대해 현재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제1항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관계영상의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에서 위와 같은 현행법 내용은 촬영의 대상을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된 경우에는 단지 촬영의 주체가 본인이었다는 이유로 현행법상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촬영 당시에는 합의에 의해 촬영한 영상의 유포가 문제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고,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은 엄격한 죄형법정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에 아무리 무겁고 중한 ‘나쁜’ 행위라도 법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존 현행법을 탄력 있게 해석하고 운용하기 어려운 법영역입니다. 그런데 사회와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매번 새로 등장합니다. 이를 적절한 시기에의 입법으로 따라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의 형사규제는 범죄행위의 확산의 방지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4

나가며

최근 형사법학과 국회에서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내용에는 성폭력행위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실체법적으로는 강간행위를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로 보고 폭행 등을 수반하지 않은 비동의간음도 처벌 대상으로 포섭하는 논의부터 성희롱행위에 대한 규제등 성폭력 처벌대상의 확대나 구성요건의 완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형사 절차적 측면에서도 앞서 말한 바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혹은 판결 시 까지 무고죄 수사 유예라거나 공소시효의 확대, 피해자에 대한 예단이나 편결을 줄 수 있는 성 이력의 증거채택 금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바람을 타고 위와 같은 내용의 많은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데,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법안들이 그 동안 전혀 문제되지 않다가 미투 운동으로 비로소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위에서 언급된 내용들은 미투 운동 이전에 이미 여성단체, 시민사회, 형법학과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묵혀 둔' 내용으로 된 새 법안들입니다. 법이 진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울어진 사회 구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기회입니다. 이번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국민들이 이 문제를 인식하지 시작하고 관심도 고조되어 있을 때 이를 동력 삼아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현행법의 문제점이나 입법 공백을 개선하는 개정의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패널토론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경찰활동

백 두 용

강원지방경찰청 여성보호담당

對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경찰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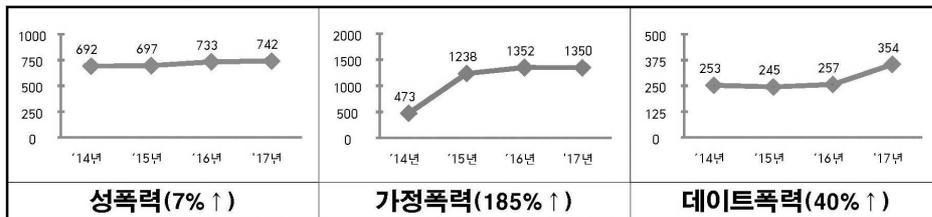
백두용 (강원지방경찰청과 여성보호담당)

강원지방경찰청

● ● 추진 배경 ● ●

「對여성 악성범죄」 관련 치안수요의 지속적 증가

- ✓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들이 매년 꾸준히 증가, 국민적 관심 사항으로 떠오름



- ✓ 對여성 악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에 발맞추어 선제적 치안대책 추진 필요

대통령 당부사항

- ▶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이 중대
- ▶ 수사당국의 수사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전환이 필요

● ● 추진 방향 및 체계 ● ●

✓ 추진 방향

- | | |
|---|------------------------|
| ① | 對여성 악성범죄 신속·적극 수사 |
| ② | 수사과정상 2차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 ③ | 對여성 악성범죄 예방활동 강화 |
| ④ | 법·제도 개선 등 인프라 구축 |

✓ 추진 전략(총 100일)

【1단계】 경찰대응 실태조사	【2단계】 집중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5.17~6.15 <30일간> • 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 참여 • 국민제보 앱에 '대여성악성범죄 경찰대응 피해사례 신고코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6.16 ~ 8.24 <70일간> •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성 확보 - 현장경찰관 교육자료로 활용

✓ 추진 체계 : 「對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추진본부」 운영, 대응역량 집중

※ <본부장> 2부장 <구성> 여청·생안·강력·사이버수사 등 관련 기능

● ● 세부 추진 계획 ● ●

① 성 폭 력	① 다중이용시설 및 대학교 內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점검(5.21~6.20) ② 위장형 카메라 판매·유통 등 집중단속(5.28~8.24) ③ 게스트하우스 內 성범죄 예방 집중 추진기간(6.15~7.14) ④ 피서지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성범죄 단속(7.1~8.31) ⑤ 인터넷 불법촬영물 공급자 중심 집중단속(6.5~8.24)
② 가 정 폭 력	① 긴급임시조치 활성화 방안 등 「가정폭력 대응강화 계획」 추진 ② 여성가족부 협업, 유관기관 공동 가이드라인* 제작 * △ 보호시설-경찰 간 핫라인 구축 △ 시설침입 등 발생 시 대응방법 등
③ 데이트 폭 력	①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운영(6.16~8.24), 신고時 TF팀(형사·여청) 현장출동 ※ 대형마트·백화점·SNS 등 온·오프라인 홍보 병행으로 실효성 제고
④ 피 해 자 보 호	① 사회적 약자 정보제공 강화를 위한 안내서(외국어, 점자 등) 발간(6월限) ② 피해자 보호활동 및 기능간 협업실태 현장점검(6.18~6.29)
⑤ 환 경 개 선	① 여성 불안환경 실태점검 및 범죄 취약지역 개선사업(3월~9월)

● ● 추진 성과 ● ●

✓ **민관 실태조사단 구성, 對여성 악성범죄 경찰대응 실태조사 실시**
 ⇒ **경찰대응 관련 문제 미발견**

- ❖ (조사방법)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 방문, 상담사 면담 등 간접 조사
- ❖ (내용) 경찰 대응으로 인한 ①2차피해 여부 ②소극 대응 ③수사 적정성 등

✓ **지자체·유관기관 합동(147명),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탈의실, 대학교(22개소) 등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총 359개소 점검**

※ 경고스티커 부착 2,930부 / 카메라 설치의심 흔적(구멍 등) 27개소 개선권고

- ❖ 대학 운영과·학생회 합동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및 기숙사 화장실 비상벨 작동여부 점검 실시 ※ KBS 라디오 동행취재 및 인터뷰 진행 (원주)



불법촬영 관련 점검



예방스티커 부착



간담회

✓ **인터넷 음란물 유통사범 3명 검거, 음란물 540개 삭제·차단**

- ❖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400여개를 업로드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인천 소재) 검거 및 해당 음란물 삭제 조치 (강원청 사이버수사대)

✓ **스토킹 6건 접수·현장 조치 및 데이트폭력 35건 접수·12명 검거**

- ❖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한 피의자(남, 47세)를 검거, 구속 (강릉)

✓ **범죄예방진단 64건 실시, 방범시설물(CCTV 12개·비상벨 24개 등) 50개(약 1억3천만원) 설치**

- ❖ 지자체와 협업, 방범용 CCTV에 췌 상황실과 연동되는 비상벨 설치, 즉응태세 확립 및 안내판 설치로 범죄심리 차단 (정선)



범죄예방진단



비상벨 설치



로그젝터 제작

패널토론

젠더폭력 해소를 위한 정책

권은진

강원도 여성복지담당

M E M O

M E M O

M E M O